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 근로자(시설물청소원) 공개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02일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

□ 최종 합격자 명단

채용예정분야	직종 및 분야	인원	최종합격자(응시번호)
공무직	시설물청소원	1	04

* 합격자는 별도 통보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- 제출기한 및 방법: 2026. 10. 12.(월)
- 제출장소: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(채용담당)
- 제출서류
 - ① 본인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※ 인터넷발급 가능
 - ② 학사 및 최종학위증명서 원본 각 1부
 - ③ 반명함 사진(3×4) 이미지 파일 제출
 - ※ 파일 없는 경우 사진 1매 제출
 - ④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 / 인터넷발급 가능
 - ⑤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※ [서식 1] 참조
 - ⑥ 국가유산청 공정채용확인서 1부 ※ [서식 2] 참조
 - ⑦ 장애인·국가유공자·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☎ 054-777-8821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 반환 청구기간 범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내 반환이 청구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. 단, 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하며(사본은 채용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) 반환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 -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: 2026. 10. 02.~ 10. 16.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[붙임 3]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
- 붙임 1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2.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.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[붙임 1]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국가유산청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. . .

확인자:

(서명/인)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국가유산청장 귀하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